

도급의 개념에서 바라본 근로자보호 책임의 범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장

조승학(법학박사)

최근에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사업장의 업무 형태가 근로자 직접 채용에서 업무위임의 도급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모든 책임은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도급유형 변화가 되면서 이때에 업무수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과 예방의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도급은 당사자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다. 그런데 최근 도급의 계약적 책임이 산안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 안전보다 우선 할 수 있는가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도급의 역사를 보면 도급계약의 시작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산되는 수공업에 의한 주문생산에서 나타난 것이다. 중세사회에서 수공업자는 일정한 일터와 간단한 도구만을 가지고 주문자가 공급하는 재료에 자기의 기술을 발휘하여 주문받은 물건을 만들거나 또는 수선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을 전형화한 것이 도급계약이었다. 중세사회에는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문 제작을 근거로 도급 의미가 정립되었다. 이러한 도급계약의 내용은 민법적 계약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계약의 내용도 정형화되어 현행 민법의 전형 계약의 하나로 발전되었다. 그런데 근대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공업이 나타나면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도급의 주문생산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산업환경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공장제 기계공업화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계속적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하여 공장의 자동화시스템을 통한 분업화가 일어나고 분업화의 생산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사업장 내에 분업화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만을 계약하여 일정부분 분업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졌다. 산업사회 초기 이후 주문생산에 의해 독점되었던 도급 형식이 대량생산을 통하여 사라지고, 업무의 분업화에 따른 사업장 내의 전문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등장하면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개념의 도급 의미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생산영역이 대량생산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전문화된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업무의 분업화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의미의 도급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전의 기업 생산활동은 생산 전체과정을 모두 책임지고 만드는 제조자이지만, 지금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그 과정의 일부를 다수 타 회사에 맡기거나 일부의 업무만을 따로 계약을 체결한 분업적 생산방식을 활용되고 있다. 이 방식이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효율화와 이윤추구라는 기업 생존전략에 따라 분업적 생산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현재 사업장내의 사내하도급형태라는 도급계약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개인 간 수공업적 주문생산에 형태에서 대량생산을 중심으로 분업적 산업도급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전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업장이라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였지만, 지금은 고용의 형태가 사업장내에서 분업적 계약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책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급은 기존에 경제적 효과만 생각했던 기업들에게 도급 근로자 안전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도급에 관한 책임의 새로운 법률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원하도급 책임의 문제이다.

최근에 일부에서는 도급의 법률적 개념을 우선하여 계약의 자율적인 의미의 도급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재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책임으로 강제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은 어떠한 계약 관계보다 우선하여 보호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장이라는 공간적 개념에서 사업주(원도급인)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도급인이 사업장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적 개념 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